

심의결과		원안대표가결	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15	3	1978. 2. 2	총재 김성환

의 안 "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"
일부 개정

의결사항 "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"을
 별첨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외관계
 법구조함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

제외취지 최근 국제수지의 호전과 정부보유양곡의 재고
 누적에 따른 통화공급의 ^{증가} 현저한 위에
 금융기관의 과도한 여신팽창이 우려되고 있
 음에 비추어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허저율을
 인상하여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통화의
 안정적 공급을 이룩하고자 본건 전가와 같이
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참고사항 1. 제의관계 법규초합

(한국은행법 제57조)

① 금통화유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

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
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예금지급준비금의율은 제58조에 규정

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

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

로 적용한다.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

및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

703

한다.

(한국은행법 제 57 조)

금융통화위원회는 제 57 조, 제 58 조의
법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
종과 같이 할 수 있다.

1.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
금융통화위원회 분류에 의한 종류별
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저지예금 지급
준비율의 결정

2. 최저예금 지급준비율의 100분의 25까지
한국은행권으로 보유하는 것의 허용

2. 청 부 물

가. 지준상황개요

나. 지준율 인상에 따른 10년중 은행별 저지자금 예상규모

다. 예금 지급준비율 변경추이

“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준비에 관한 규정”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												
제 1 조 (목 적) (생 략)	제 1 조 (목 적) (원행과 같음)												
제 2 조 (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) ① 한국은행법 제 57조 및 제 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.	제 2 조 (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) ① 한국은행법 제 57조 및 제 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.												
705 <table border="1" style="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padding: 5px;">예 금 종 별</th><th style="padding: 5px;">지 급 준 비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저축성예금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17 %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요구불예금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24 %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예 금 종 별	지 급 준 비 율	저축성예금	<u>17 %</u>	요구불예금	<u>24 %</u>	<table border="1" style="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padding: 5px;">예 금 종 별</th><th style="padding: 5px;">지 급 준 비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저축성예금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20 %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요구불예금</td><td style="padding: 5px;"><u>27 %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예 금 종 별	지 급 준 비 율	저축성예금	<u>20 %</u>	요구불예금	<u>27 %</u>
예 금 종 별	지 급 준 비 율												
저축성예금	<u>17 %</u>												
요구불예금	<u>24 %</u>												
예 금 종 별	지 급 준 비 율												
저축성예금	<u>20 %</u>												
요구불예금	<u>27 %</u>												

행

행

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
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지급준비금의 외채
율은 다음과 같다

예금종별	지급준비율
저축성예금	12%
요구불예금	17%

706

③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

개

경

(안)

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
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지급준비금의 외채
율은 다음과 같다.

	예금종별	지급준비율
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	저축성예금	17%
	요구불예금	22%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	저축성예금	15%
	요구불예금	20%

③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

현

행

근로자 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예금지급준비 최저율을
2%로 한다.

제 3 조 (예금의 종류)

(이 타 생 략)

(신 설)

707

개

정

(가)

근로자 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예금지급준비 최저율을
2%로 한다.

(원 템과 같음)

부 칙

이 규정은 1978. 2. 23 (2월 하반월 요지준
적립시)부터 시행한다.

다만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1978. 4. 22까지의
기간중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
최저율은 다음과 같다.

현

행

개

정

(안)

708

	1982. 2. 23 ~ 3. 22	1983. 23 ~ 4. 22
지 추 성 예 금	18%	19%
(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)	(14%)	(16%)
(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)	(15%)	(14%)
요 구 불 예 금	25%	26%
(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)	(19%)	(21%)
(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)	(18%)	(19%)